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31,849,192	66,955,476
일반회계		1,925,536,715	57,766,101
특별회계		306,312,477	9,189,374
	공기업특별회계	224,967,747	6,749,0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774,334	2,993,2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5, 193, 413	3,755,802
	기타특별회계	81,344,730	2,440,342
	교통사업 특별회계	23,501,533	705,0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01,406	63,0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48,784	94,464
	대지보상 특별회계	2,475,319	74,26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9,744	5,992
	수질개선 특별회계	45,712,204	1,371,36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205,740	126,172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 제 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294,519천원으로 한다.
- 제 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